

상애원(양로시설) 요양보호사 채용 공고

상애원(양로시설)에서는 입주하신 어르신에 대한 전반적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함께 근무할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1 모집부분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인원	응시자격
요양보호사	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정년(만 60세)이 도래되지 않은 자◦ 성별무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노인학대범죄 경력이 없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근무조건

가. 시용기간 : 3개월

※ 수습기간 중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부적격자는 임용 취소

나. 보수수준 : 기본급여, 상여금, 가족수당등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다. 근무시간 및 형태 : 주 40시간 3교대 근무

- 오전근무: 07시~16시30분(휴게시간1시간30분포함)

- 낮 근무: 09시~18시(휴게시간1시간포함)

- 오후근무: 13시~22시(휴게시간1시간포함)

- 야간근무: 22시~익일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수당 지급)

※ 시설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됨

라. 근무지 : 상애원(원주시 행구덕현길 108)

마.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바. 복지수당 : 지급

3

전형방법 및 일정



4

원서 접수

- 서류 접수기간 : 2023.05.16 ~ 06.08. 18:00 도착분 까지
- 서류접수 방법 : 방문 . 우편 . 이메일(sangaewon@hanmail.net)제출
 ※ **입사지원서, 개인 및 민감정보 이용·수집 동의서는 자필서명 필수**

채용분야	제출서류	
요양보호사	필수	가. 입사지원 이력서/직무능력소개서
		나. 개인 및 민감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1부
		다. 자격증 사본 1부

5

채용서류 반환 등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최종합격자 제외) 합격통보 예정일 7일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청구기간 경과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취소 가능)
-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

으므로,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담당자 (☎033-747-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2023. 06 . 15 .

상 애 원 장

